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547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4. 9.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2. 12.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3. 3. 10. 접수 제86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E 유한회사)는 2014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132,789,552원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으로 진행되어 회부된 조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523318)에서 2014. 8. 19. D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2. 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G, D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3. 3. 10. 접수 제86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그 무렵 재산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이 유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참조).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에 대하여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D와 피고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D가 피고에게 그 지분을 10,000,000원에 매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지분을 1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 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2022. 12. 1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나우상

별지